

제421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7일(금)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안건 미정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 제사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상범 간사님 등 7인으로부터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52조 제3호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법 52조 위원회 개최 조건에 대해서 국회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52조 3항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회의를 개회했습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상 저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간사님들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50조에 간사 역할에 대해서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0조 4항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조항이 3항입니다.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회법 위원회의 개회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다른 상임위 같

은 경우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개회해 달라고 요구해도 실제로 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인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개회해서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은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국회 운영상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위원회 개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는 그런 위원장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는 그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개회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상범 간사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있는 관계로 3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혹시 제가 핸드폰을 꺼 놓고 있는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유상범 위원** 아니아니야, 했을 것 같은데. 헛갈리네.

○**김용민 위원** 재판 방해인데, 재판 방해. 재판 중에 전화를 하시다니……

○**위원장 정청래**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주된 심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회의를 열 것을 생각했다면 저한테 미리 요청을 하시고 또 안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셨으면 그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좀 더 윤택하게 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 보좌관한테 확인한 것은 유상범 간사께서 ‘공수처장을 불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증인 선서를 하는 기관장 증인 같은 경우는 출석을 요구하는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질의 같은 경우도 사실상 24시간 이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출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보좌관한테 보고받은 바는 오후 6시쯤이기 때문에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에 필요한 관례에 따라서 현안질의에 필요하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 공수처장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복잡한 관계로 어제 오후에 내일 출석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우리 보좌관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요구한 공수처장 출석이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제가 공수처장을 출석시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출석, 현안질의 지금 원하시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예, 현안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연하고요. 지금 이 사안에서 특히 공수처 수사관이……

○위원장 정청래 아니,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그것을 원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석이 여러 가지 관계상 되지 않았으므로 양 간사간 협의를 해 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을 출석시켜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조만간 적절한 시기에 간사님과 협의하에 잡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 오늘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으니 양 간사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먼저 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공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불법 논란 시비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그들의 불법체포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제다가 최근에 나온 사안을 보면 55경비단장을 겁박해서 사실상 출입 승인을 받은 것처럼 국민께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55경비단장에게 출입 허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를 했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그 공지에 대해서 즉각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25분에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하다가 오후 4시 24분쯤에는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해명을 했지만 공수처가 해명한 것은 이미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55경비단에 보내고 난 이후였습니다. 뒤늦은 해명조차 사실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또 공수처가 2시 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첫 번째 공문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딱풀 공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공문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승인 권한 없다는 수없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조사 중인 55경비단장에게 관인 날인을 강압을 해서 대리 날인했다는 그런 부분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공수처의 불법행위 또 무리한 행위는 왜 일어났느냐 생각을 하면 2차 체포영장에는 1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121조의 적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방적인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관저 출입 승낙을 받았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의 문제를 야기한 공수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직접수사 당사자도 아닌 상황에서 현재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피다, 이렇게밖에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데, 그래서 위원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오늘 오후라도 바로 출석을 시키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박범계 간사님.

○**박범계 위원**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님, 특히 유상범 간사님의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달라는 그 요청에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가능한 한 법사위를 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가 여야 간의 대립을 넘어서서 서로 토론하고 그 속에서 질충·조정을 하는 그러한 좋은 길로 가는 데 아주 전향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로서 일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다고 느껴집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저와 간사 협의를 어제 하셨는데 공수처장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경호처 외곽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장의 문제다 그 얘기는 곧 공수처, 공조본이…… 아까 55경비단장의 공문에 딱풀 공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고 제가 볼 때 오늘은 공수처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오늘 밤 9시까지 시한이 임박한 윤석열 내란수괴죄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 만큼 공수처장을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회의 소집 여부는 위원장께서 결정을 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간사 간 협의가 됐고요.

우리는 지난 간밤에 거의 자정이 다 될 무렵 서부지법, 즉 체포영장을 두 번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윤석열 피의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위 체포적부심,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집행정지가 돼 있지만 이게 뭐니까, 잡범처럼?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불과 5시에 본인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그로부터 약 7시간 만에 체포 집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따지는 문제와 서부지법의 재판 관할권을 따지는 문제는 이미 클리어된, 완전히 그 의문이 해소된 문제입니다.

55경비단장의 딱풀 공문이든 어떤 공문이든 문서로서의 완전한 형태로 성립되어 있고, 처음에는 판인을 탈취해서…… 세상에 공수처, 공조본이 판인을 탈취해서 그 공문서에 찍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지금은 강압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모든 것 국방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수처장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오후라도 나와서 공수처장의 그러한 소위 판인 탈취 혹은 강압, 위조, 이러한 허황된 주장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스스로 해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2개의 조항이 상호 모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순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국가원수이고 외국에 대표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이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시에는 설령 놔둘죄, 절도죄,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5년간의 임기 중에는 그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내란과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불소추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된다, 즉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면도 된다라는 것을 헌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에서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란 다시 말해서 5·16 군사쿠데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했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체포·구금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에는 저항했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했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어떤 것 하나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고 체포되는 순간에도 2분 48초 동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관저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이 이런 하소연을 했답니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무거워요, 항명죄가 무거워요? 저는 어찌 해야 됩니까?’라고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헌법 86조 등에 보면 대통령의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나 몸 보신하자고, 피하자고, 시간을 좀 벌자고 본인의 직속 부하일 수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빠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하는 것이 합법하다라고 인정하고 몇 차례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공수처 오늘 수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출석 거부한 건 이재명 대표지요. 수시로 했어요. 증언 거부하고 진술 거부하고 한 것 수시로 했어요.

○서영교 위원 뭘 수시로 해요?

○유상범 위원 수시로 했지.

○위원장 정청래 지금 제 발언 중이니까요.

○서영교 위원 뭘 수시로 해? 팩트만 하세요, 팩트만.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눈물짓는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왜 악이라고 생각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초래한 국민의힘의 불행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발단의 원인은 윤석열이에요. 민주당이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포되는 순간까지,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정으로?

○유상범 위원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장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국민들한테 이거 가지고 정당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청래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게 해 달라고 대선 때 선거운동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한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이렇게, 국회 직원들이 의사일정 페이퍼를 작성하는데요 이런 페이퍼 제가 처음 봤습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10시, 1. 안건 미정.

○유상범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위원장 정청래 오늘 안건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특검법이라도 좀 가져올 줄 알았어요, 저는. 특검법 기대하고 왔는데 안건이 없어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안건을 만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마치 무슨, 왜 직원들한테 그런 잘못을 돌려?

○위원장 정청래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특검법 심의합시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 출석 등 현안질의 회의는 추후 잡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범계 박은정 박준태 박희승 서영교 송석준 유상범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정청래 주진우

○첨가 위원(1인)

조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은정
전문위원 이화실